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3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
발 의 자: 김영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현기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 이효원, 임춘대, 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8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신설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음
- 그러나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바, 단순히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정법령의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이 있음
- 이에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및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

- 따라서 명확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'적용례'를 두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, 학교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함 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미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조례 제91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(2024.3.15.) 이후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.3.15. 신설된 제11조제1항 제10호의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확인결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

※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(시행2024. 3. 15.) [서울특별시조례제9145호, 2024. 3. 15., 일부개정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